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안전부 소관

2026. 4.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목 차

1.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1
2. 심사경과	2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
4.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	4
5. 대체토론의 요지	84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87
7. 심사결과	89
8. 소수의견의 요지	89
9. 부대의견	89
※ 첨부	91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 세출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마.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바.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사. 소방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년 3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국회(임시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행정안전위원회(2026. 4. 2.) 상정 · 제
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 · 결산 소위원회(2026. 4. 6.) 상
정 · 심사 · 의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4. 6.) 소위원
회 심사보고 · 의결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A)	추경안(B)	증 감 (C=B-A)	
				% (C/A)
일반회계	76,905,548	86,429,597	9,524,049	12.4

※ 자료: 행정안전부

4.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

I. 개 관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편성 배경 및 요건

□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①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② 저소득,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청년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③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에너지·신산업 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9조¹⁾에 따르면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나. 편성 규모 및 주요 내용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6.2조원 수준으로, 정부는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자체재원 1.0조원 활용하여 26.2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이를 재원으로 한 일반지출 25.2조원 중 10.1조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2.8조원은 민생 안정, 2.6조원은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9.8조원은 재정보강에 활용하고, 국채상환에 1.0조원을 활용할 계획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구 분	편성액	주요 내용
1.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 전국민 부담 경감 5.1조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원 ▶ 에너지 복지 0.2조원
2. 민생 안정	2.8조원	▶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조원 ▶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조원 ▶ 고물가 대응 0.1조원
3.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 피해기업·산업 지원 1.1조원 ▶ 에너지·신산업 전환 0.8조원 ▶ 공급망 안정화 0.7조원
4.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 지방정부의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교부세(금) 증액 등 9.7조원
5. 국채 상환	1.0조원	
합 계	26.2조원	

※ 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가. 행정안전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의 증감은 없고,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76조 9,055억 4,800만원 대비 총 9조 5,240억 4,900만원 증액된 86조 4,295억 9,700만원임.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5년		2026년 본예산 (A)	2026년 추경안(변경안)		증감 (B-A)	증감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요구	조정(B)		
총지출(전체)	72,083,936	85,982,183	76,905,548	86,429,597	86,429,597	9,524,049	12.4
지출(추경대상)	62,048,147	62,048,147	63,606,468	73,130,517	73,130,517	9,524,049	15.0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1350-302)	-	-	-	4,825,185	4,825,185	4,825,185	순증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3131-306)	-	-	-	19,515	19,515	19,515	순증
보통교부세 (1631-300)	60,401,769	60,401,769	61,698,352	66,237,321	66,237,321	4,538,969	7.4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632-300)	658,551	658,551	763,247	819,399	819,399	56,152	7.4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2632-301)	164,638	164,638	190,811	204,849	204,849	14,038	7.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644-300)	823,189	823,189	954,058	1,024,248	1,024,248	70,190	7.4

자료: 행정안전부

나. 행정안전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9조 5,240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8조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9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내국세 추계액이 본예산 편성당시 보다 24.2조원 증가(343.9조→368.1조)함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예산을 각각 4.5조원, 1,404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임.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내역]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A)	2026년 제1회 추경안(변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1350-302)	-	-	4,825,185	4,825,185	순증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3131-306)	-	-	19,515	19,515	순증
보통교부세 (1631-300)	60,401,769	61,698,352	66,237,321	4,538,969	7.4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632-300)	658,551	763,247	819,399	56,152	7.4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2632-301)	164,638	190,811	204,849	14,038	7.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644-300)	823,189	954,058	1,024,248	70,190	7.4

자료: 행정안전부

II. 검토의견

1. 고유가 피해지원금(신규)(1350-302)

- 행정안전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밀히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사례와 같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지급수단 및 사용처를 설정하며, 동 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대해 검토하여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논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신규)’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사업으로 4조 8,25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 본예산 (A)	2026년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고유가 피해지원금	-	-	-	4,825,185	4,825,185	순증
고유가 피해지원금	-	-	-	4,825,185	4,825,185	순증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지방·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

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²⁾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서울 70%, 그 외 80%)
- (증액내역) 약 6조 1,000억원 (국비 약 4.8조원, 지방비 약 1.3조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4조 8,199억 1,000만원
 - (부대비용) 시스템 운영 등 국비 약 52억 7,500만원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 구체적 지급방식

- 소득·지역에 따른 차등지급
 - (소득) 소득하위 70%, 차상위·한부모가족 및 기초수급자 구분
 -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지역 및 인구감소 특별지역* 구분
- *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비타당성 낙후도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구분	소득하위 70% (3,256만명)	차상위·한부모 (36만명)	기초수급자 (285만명)
수도권	10만원	45만원(+35만원)	55만원(+45만원)
비수도권	15만원(+5만원)	50만원(+40만원)	60만원(+50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20만원(+1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	25만원(+15만원)		

※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2)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지표 하위지역 및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에서 공통으로 하위지역에 해당하는 40개 지역을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우대지역으로 규정함

□ 이는 2020년 제2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함) 사업,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라 함) 사업 등과 유사한 현금성 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고유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 구체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주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4.3조원이 소요되었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9~10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여 총 11조원이 소요되었음.
- 또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역에 따라 15~45만원을 지급한 뒤, 2025년 9월 추가로 소득기준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총 13.9조원이 소요되었음.
- 이때, 과거 재난지원금 및 소비쿠폰 사업은 지급수단으로 기존 소지중인 i)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성 포인트를 충전받거나 ii) 선불카드 또는 iii)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1~4개월 미만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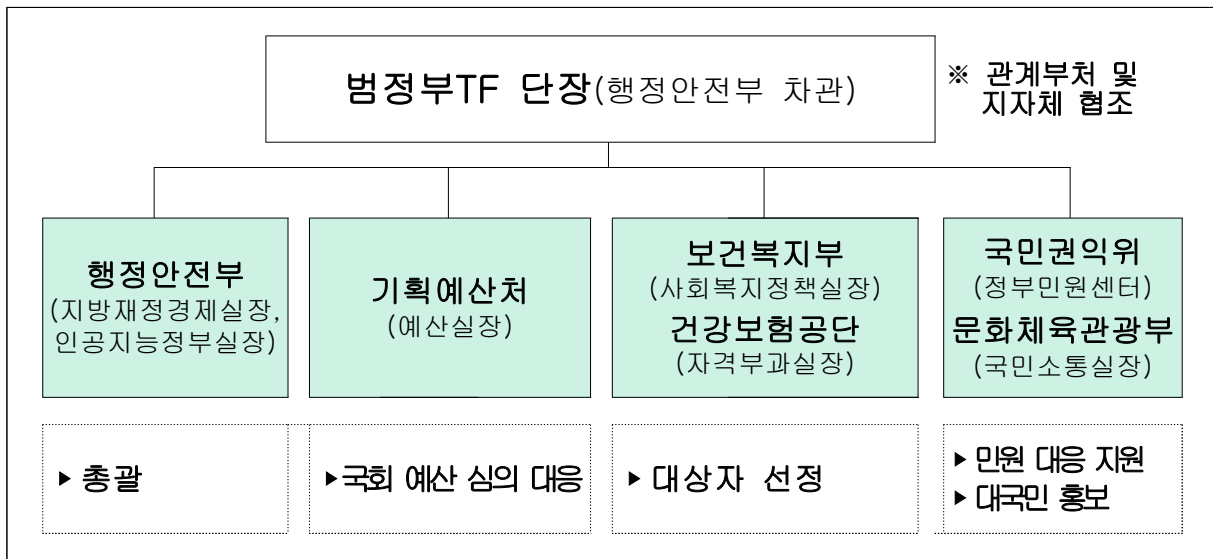
[과거 유사 사업과의 비교]

구분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년 제2회 추경)	고유가 피해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20년 제2회 추경)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21년 제2회 추경)		
지급대상	전체가구 (2,171만 가구)	소득하위 80% 가구 (1,856만 가구)	전 국민 (5,117만명)	소득하위 70% (3,256만명)
지급단가	가구원 수 비례 차등지급 ※ 40~100만원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추가 지급	1인당 15~55만원 ※ 소득·지역 기준 차등지급	1인당 10~60만원 ※ 소득·지역 기준 차등지급
지급시기	’20년 5월	’21년 9~10월	(1차) ’25년 7월 (2차) ’25년 9월	미정
사용기한	’20년 8월말 (최대 4개월 미만)	’21년 12월말 (최대 4개월 미만)	’25년 11월말 (1~4개월 미만)	미정
지급단위	세대주 지급	개인 지급	개인 지급	개인 지급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택1 (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취약가구 현금 지급)			
재정소요	14.3조원	11.0조원	13.9조원	6.1조원
국비	12.2조원	8.6조원	12.2조원	4.8조원
지방비	2.1조원	2.4조원	1.7조원	1.3조원

※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 2020.12., 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22.6.,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지급시기, 선별기준, 지급수단, 사용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는 향후 구성될 ‘고유가 피해지원금 TF(가칭)’³⁾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여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임.

[법정부 TF 구성(안)]



※ 자료 :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4.8조원), 전산 인프라 사용비(29.5억원), 성과분석 연구용역(2억원), 전담 콜센터 운영(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법정부 TF 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행정안전부가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기획예산처는 국회 예산 심의 대응,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선정, 국민권익위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원 대응지원 및 대국민 홍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사업 세목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	예산	세부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4,819,910	○ 피해지원금 등 : 4,819,910 - 피해지원금 : 1식×4,751,200 - 발행비용 등* : 1식×68,710 * 발행비용, 보조인력비, 장비임차료, 지방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210-01)	100	○ TF팀 운영물품 구입 등 : 100 - 설명서 및 홍보물품 등 : 20회×5,000,000원=100
공공요금및세제 (210-02)	2,949	○ 인프라 사용 등 : 2,949 - 전산 인프라 사용료 등 : 1식×2,949,000,000원=2,949
관리용역비 (210-15)	900	○ 전담 콜센터 운영 : 900
국내여비 (220-01)	10	○ 현장점검 등 출장비 : 10 - 현장점검 여비 등 : 1.0×10회
사업추진비 (240-01)	60	○ 범정부 TF 관련 협의회 운영 : 30 - TF 관련 협의회 운영 등 : 0.5×60회 ○ 현장점검 간담회 : 30 - TF 관련 협의회 운영 등 : 0.5×60회
일반연구비 (260-01)	200	○ 성과분석 연구용역 : 2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056	○ 새올시스템 AP개발비 : 1,056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 지역 ※ 기획처 기준

구 분	인구감소지역(89개)	
	우대지원 지역 (49개)	특별지원 지역* (40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군위, 남구, 서구	
인천	강화, 옹진	
경기	가평, 연천	
강원	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양구, 화천
충북	옥천, 제천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예산, 태안	부여, 서천, 청양
전북	김제, 남원, 정읍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전남	담양, 영광, 영암, 진도, 화순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함평, 해남
경북	고령, 문경, 성주, 안동, 영주, 영천, 울릉, 울진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경남	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	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함천

*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시·군

※ 자료 : 행정안전부

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보장을 위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설계 필요

- 첫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준비가 미흡하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약 6.1조원(국비 4.8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 사업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구성될 범정부 차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TF’에서 확정될 것이라는 설명임.
- 그런데, 동 사업 목적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및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점, 기존 현금 지원성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은 지급 직후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기에 피해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에도 선별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중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는바,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⁴⁾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4)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국회에서 충실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소득기준으로 선별지급이 이루어졌던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의 경우 2021년 7월 24일 예산이 확정되어 2021년 9월 6일 지급을 시작하였으며(45일 소요), 2025년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2025년 7월 4일 예산이 확정되어 2025년 7월 21일 지급을 시작하였음(17일 소요).

□ 둘째,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고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을 정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쟁이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음⁵⁾.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법령상 요건 외에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한시성 등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충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최근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

5) 「국가재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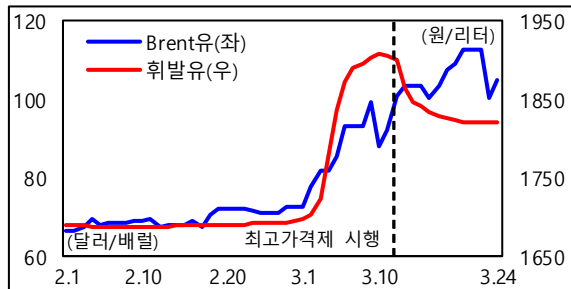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화될 경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국내경제에 악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⁶⁾.

[국제유가 및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추이]

국제유가 및 국내휘발유 가격



주요 금융·외환시장 지표

	2.27일	3.10일	3.25일	(2.27일비)
코스피(pt)	6,244	5,533	5,642	(△9.6%)
국채금리(3y, %)	3.041	3.283	3.558	(+52bp)
환율(원/달러)	1,440	1,469	1,500	(△4.0% ^{절하})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2026.03.26.)

- 이러한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적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사업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동시에 물가를 자극하여 장기적으로 오히려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통상 국제유가의 상승과 같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공급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GDP 성장률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할 수 있음. 이때, 정책당국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됨⁷⁾⁸⁾.

6)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2026.3.,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2026.3월)」, 2026.3 등 참조

7) 구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정책당국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하는 경우 총소득은 회복되거나 물가수준은 상승하게 되며, 물가수준을 안정화하기 위해 긴축적 거시경제정책을 하는 경우 물가수준은 안정되거나 총소득의 감소폭이 더욱 커지게 됨.

8) 『거시경제론』(정운찬·김영식, 율곡출판사, 2018, pp310-311), 『거시경제학』(N.Gregory Mankiw 지음, 이병락 옮김, 시그마프레스, pp315-317)

- 즉,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달성하려는 “물가안정”과 “소비 증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라는 정책목표는 거시경제적으로 상충관계에 놓여 있어 동 사업을 통해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대한민국의 2026년 GDP 성장률을 직전 전망 대비 하향조정하고 물가수준은 상향조정하는 등¹⁰⁾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임¹¹⁾.

9) 관련 보도 : “흔들리는 ‘성장·물가’..스태그플레이션 현실로?”, YTN, 2026.3.27.

“성장률 전망 확 꺾이고, 물가 전망 확 올랐다…고개 드는 경제위기론”, 뉴시스, 2026.03.28.

10) 이와 관련해서는 후단의 참고자료 참조

11)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물가 수준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함. 최근 한국은행은 서면질의를 통해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타 글로벌 투자은행 또한 수요 진작보다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 흡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플레이션 재자극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음

관련 보도 : “한은 “추경, 물가 자극 가능성 작아…성장 영향은 추정 어려워”“, 연합뉴스, 2026.3.15.

“한국 25조 추경 카드에 모건스탠리 “성장 0.15%p 방어, 물가 영향 제한적”, 파이낸셜 뉴스, 2026.3.27.

[주요기관의 2026년 대한민국 GDP 성장률 전망]

기관명		GDP 성장률		물가수준	
		직전 전망	최근 전망	직전 전망	최근 전망
국내 기관	한국은행	1.8% (2025.11)	2.0% (2026.2)	2.1% (2025.11)	2.2% (2026.2)
	한국개발연구원(KDI)	1.8% (2025.11)	1.9% (2026.2)	2.0% (2025.11)	2.1% (2026.2)
국제 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2025.12)	1.7% (2026.3)	1.8% (2025.12)	2.7% (2026.3)
	국제통화기금(IMF)	1.8% (2025.11)	1.9% (2026.1)		

※ 자료 : 각 기관 발표자료 참조

- 현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정책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을 정교하게 설정하여야 함.
- 셋째, 타 부처에서도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복지 확대, 고용 안정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 목적 지원 사업 현황(예시)]

(단위: 억원)

구분	내용	사업대상	예산액
석유최고가격제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에 필요한 자원 보강	전 국민	50,000
대중교통 환급 지원 (국토부)	K 패스 환급률 확대	전 국민 (저소득층 환급률 확대)	877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기후부)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5만원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102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농림부·해수부)	시설농가 및 어업인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시설농가(5.4만개소) 및 어업인(2.9만명)	546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농림부·해수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3만원) 지급	전 국민	800
그냥드림센터 확대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완화 목적 기본 생필품 지급 그냥드림센터 전국 확산	전 국민	21
위기가구 긴급복지 확대 (복지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대상 생계·의료·주거 등 비용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신청가구	13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노부)	원자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 대상 지원 확대	특정 업종 근로자	186
문화·관광업계 지원 (문체부)	영화·관광·숙박·휴가 비용 지원	전 국민	586

※ 자료 : 기획예산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참조

□ 즉, 고유가에 특별히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 유사·중복되는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단순 소득보전 성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보다 에너지 비용 직접 감면 등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특정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최근 주요 경제지표

[최근 5개년 GDP 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율]

연도	분기	GDP 성장률 (A)	민간소비 증가율 (B)	격차 (B-A)
2021	1분기	2.6	0.6	△2.0
	2분기	7.0	4.3	△2.7
	3분기	4.6	3.7	△0.9
	4분기	4.2	6.4	2.2
	연간	4.6	3.7	△0.9
2022	1분기	3.4	4.3	0.9
	2분기	3.0	4.4	1.4
	3분기	3.4	5.3	1.9
	4분기	1.3	2.9	1.6
	연간	2.7	4.2	1.5
2023	1분기	1.3	5.0	3.7
	2분기	1.2	1.7	0.5
	3분기	1.5	0.7	△0.8
	4분기	2.2	0.8	△1.4
	연간	1.6	2.0	0.4
2024	1분기	3.4	1.1	△2.3
	2분기	2.2	0.7	△1.5
	3분기	1.4	1.3	△0.1
	4분기	1.1	1.1	0
	연간	2.0	1.1	△0.9
2025	1분기	0.0	0.6	0.6
	2분기	0.6	0.9	0.3
	3분기	1.8	1.9	0.1
	4분기	1.6	1.9	0.3
	연간	1.0	1.3	0.3

주) 동 지표는 원계열, 실질, 전년 동기비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국민계정→주요지표(연간·분기 지표)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동향]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2021	0.9	1.4	1.9	2.5	2.6	2.3	2.6	2.6	2.4	3.2	3.8	3.7	2.5
2022	3.8	3.8	4.2	4.8	5.3	6.0	6.3	5.7	5.5	5.6	5.0	5.0	5.1
2023	5.0	4.7	4.2	3.7	3.4	2.7	2.4	3.4	3.7	3.8	3.3	3.2	3.6
2024	2.8	3.1	3.1	2.9	2.7	2.4	2.6	2.0	1.6	1.3	1.5	1.9	2.3
2025	2.2	2.0	2.1	2.1	1.9	2.2	2.1	1.7	2.1	2.4	2.4	2.3	2.1
2026	2.0	2.0	-	-	-	-	-	-	-	-	-	-	1.9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테마별통계지표→소비자물가지수

다.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선별기준 마련 필요

- 첫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경우 소득 기준(하위 70%) 설정에 대한 논란과 지급 대상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대상자에 대한 선별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소득분위 하위 70%,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등으로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그 구체적인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범정부 TF 내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며 소득보전 기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입장임.
-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결정하는 선별방식을 채택할 때에는 보편·타당한 기준¹²⁾을 찾기 어려우므로 하위 70%라는 기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¹³⁾.
- 특히, 해당 사업이 고유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대상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 70%가 유가 변동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나 실증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 선정의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소득 기준 하위 70% 선별 시 어떠한 선별기준을 채택하는지

12) 정부는 당초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지급이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상위 30%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상위 20%로 설정하였고, 2025년 소비쿠폰 지급 시에는 상위 10%로 설정하였음.

13)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이의신청이 39.5만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이의신청이 46.1만건 제기되었고,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1차 지급에서 약 39.6만건 2차 지급에서 약 16.8만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음.

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하였는데,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¹⁴⁾하여 적은 행정비용으로 신속히 지급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한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와 기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각 가입자 간 산정방식과 소득시점의 차이가 있어 양측의 소득여건을 동일하게 반영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움.
-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등 재산 정도를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출되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같은 소득 지표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 방식별 보험료 산출 방식]

구분	산출방식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19%)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11.5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보험료 산정 시점과 관련하여, 만약 정부가 2026년 4월 건강

14) 2025년 기준 건강보험가입자는 약 5,139만명으로, 그 중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약 3,542만명, 지역가입자는 약 1597만명임.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직장가입자는 전월인 2026년 3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2025년 5월에 신고한 2024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¹⁵⁾되어, 지역가입자는 지난 1년간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등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함.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시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6년 3월 보수월액 기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규모(종합소득세 2024년분) 기준으로 2025.11.~2026.10월까지 보험료 산정

주) 2026년 4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다고 가정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상담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별함에 있어서도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앞서 제시되었던 형평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갱신하는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는 2024년 5월에 신고한 2023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됨.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보공단의 보험료 상담 등을 위한 인력 지원, 서버 증설 등 전산 인프라 확충
- (예산액) 49억 7,200만원
 - (민원대응 지원) 건보공단의 보험료 상담을 위한 인건비 등 20.5억원
 - (전산인프라) 상담전용 AI 모델 개발용 장비 등 29.22억원

※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II-1) 참조

- 한편, 최근 3개년(2022~2024년)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를 참고할 때, 중위소득 150%는 약 416만원이며, 중위소득 150% 미만 비율은 약 71%~71.6%이므로 해당 지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⁶⁾.

[최근 3개년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관련 통계]

(단위 : 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소득	353	363	375
중위소득	267	278	288
중위소득 50% 미만	19.9	19.9	19.9
중위소득 50%이상 150% 미만	51.1	51.4	51.8
중위소득 150% 이상	29.0	28.6	28.4

※ 자료 : 국가통계포털→평균소득, 중위소득, 소득분포 통계

- 둘째, 소득 이외의 선별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안전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여 지역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가이

16)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2024년 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소득하위 70%에 대응되는 소득분위 14분위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평균 14.9만원(최대 15.7만원) 지역가입자가 평균 8.2만원(최대 9.3만원) 임

드라인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TF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주민등록인구¹⁷⁾를 선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지역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유가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나 실증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 선정의 타당성 확보가 미흡함¹⁸⁾.

□ 또한,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난민 등에 대한 지원 여부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¹⁹⁾²⁰⁾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17) 이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거주지가 분명한 거주자,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이 이에 해당하며 외국인은 제외됨.

1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차등 지급은 기본적으로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된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해 고유가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설명임

19)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지급 대상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

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라.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2. 지급 제외

가.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출소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국내에서 소비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20년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및 2025년 소비쿠폰 지급 당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였음²¹⁾²²⁾).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에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²³⁾.

□ 선별기준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2020년·2021년 재난지원금 및 2025년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²⁴⁾, 행

20) 이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37),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563)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2024.07.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2024.08.01. 제416회 제2차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2024.08.19.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2024.09.26. 재의결을 거쳐 부결되어 폐기되었음.

2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 4,303만명에게 10조 7,565억원 지급완료“, 2021.12.08.)에 의하면 재외국민·외국인 23,680건, 국적취득·해외이주자에 대해 1,593건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22) 참고로, 2024년 영주권자 수는 20만 2,968명, 결혼이민자 수는 118만 1,436명, 장기체류외국인은 204만 2,017명이며,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총 1,544명(24년은 105명)임. (법무부 출입국통계 참조)

23)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수를 고려할 때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제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2024.03.28. 2020헌마1079).

24)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69-70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248 / 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72-79 / 국회 예산정책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233-237 /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291-29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19-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30-31 /

정안전부는 선별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²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26-32

25) 참고로, 2025년 당시 정부는 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에 대해 자산 기준을 적용하였고,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험료를 가산정하는 절차를 거쳤음.

라.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지급수단 및 사용처 설정 필요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지급하되, 지급수단별 구체적인 비중, 지급수단별 사용처,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런데, 현재 지급수단의 종류만 개략적으로 결정되고 지급수단 비중, 사용처 제한, 사용기간 설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의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는 지급수단별 특징, 기존 현금 지급성 사업의 업종별 효과를 분석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수단에 관한 사항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재난지원금 및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 등이었는데²⁶⁾,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신용·체크카드 지급이 7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또한,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신용·체크카드 비중이 약 69%로 가장 높았음.

26)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취약계층에 대해 현금지급이 이루어졌음

[과거 유사 사업 지급수단 분포]

구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합계
긴급재난지원금 (2020)		1,464만 가구 (66.1%)	292만 가구 (13.2%)	173만 가구 (7.8%)	287만 가구 (12.9%)	2,132만 가구 (100.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		3,078.1만명 (72.1%)	445.5만명 (10.4%)	748.2만명 (17.5%)	-	4,271.8만명 (100.0%)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1차	3,464만 건 (69.2%)	615만 건 (12.3%)	930만 건 (18.6%)	-	5,008만 건 (100.0%)
	2차	3,049만 건 (68.5%)	579만 건 (13.0%)	825만 건 (18.5%)	-	4,453만 건 (100.0%)

주) 분류별 건수와 합계 건수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음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수급자가 등록한 카드를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용 및 관리가 편리하나,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지역경제·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가 낮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과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및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마트·식료품, 음식점 등에서 사용된 비중이 전체의 50%를 초과하였고,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연매출 30억 미만의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사용률은 2020년 63.4%, 2021년 80.5%였음²⁷⁾.

□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하나, 신용·체크카드와 사용처가 같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되며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지급 시 일정한 발행비용이 발생하게 됨²⁸⁾.

27)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에 대한 사항은 후단의 참고자료2 참조

28) 행정안전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선불카드 발행비용을 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발행비용은 추후 결

□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 내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신용·체크카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²⁹⁾.

□ 그러나, 사용처가 신용·체크·선불카드와 비교하여 제한적³⁰⁾이어서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낮으며, 부정유통 단속비용, 기타 운영비용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³¹⁾이 소요되고 지류 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경우 현금화가 가능해 지역 상권에 대한 소비 증대 효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³²⁾³³⁾.

제한다는 입장임

29) 한편,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개이나, 이를 발행하고 있지 않은 43개의 지자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미발행 시 그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발행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미발행하는 경우 그 상급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발행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자치단체의 주민이 1개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음(행정안전부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역사랑상품권).

30)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례에서는 신용·체크·선불카드의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이었던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연 매출액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였음. 참고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5.9.)는 기본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업체에 한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1) 행정안전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을 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발행비용은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임

3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60%~80%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비율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3)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100-103 참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수단별 비교]

구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장점	낮은 행정비용	카드 미보유자 이용 가능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발급 편리성		
	상대적으로 넓은 사용처	상대적으로 넓은 사용처	
단점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비용 발생
	접근성 (카드 보유자 限)	발행비용 발생	현금화 가능성 존재
			제한된 사용처 (업종 및 지역 제한)

[과거 현금성 지원 사업의 사용처 비교]

구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긴급재난지원금 (2020)	사용불가 업종 제외 신용·체크카드 가맹점 ※ 지역 제한(특.광역시, 도)	지자체 재량 ※신용체크카드 기준 준용 권고	지자체 지역별 가맹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사용불가 업종 제외) ※ 지역 제한(특.광역시, 시군)		지자체 지역별 가맹점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	미정		

※ 주 1)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既 지급 중인 바우처(복지부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한 기준

2) 사용불가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임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과거의 사례를 참고할 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수단 역시 편의성이 높은 신용·체크카드 위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행정안전부가 의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급 수단별 특성과 매출 증대 기여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 운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한편, 2020년의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 대한 총 2.1조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³⁴⁾되었는데, 해당 가구에 대한 별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 증가 효과는 지원금액의 21.7% 수준으로 분석되며, 식료품 및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34)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 예산 14.3조원 중 2.1조원이 현금으로 우선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약 12.1조원은 수급 가구에 지급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선불카드는 1.84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은 0.67조원, 신용·체크카드는 9.62조원이 선택되었음.

참고1

기존 현금성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

구분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년)
	신용·체크카드 수령가구	현금 수령가구	신용·체크카드 수령가구
연구기관 /연구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영욱 ※KDI 연구위원(좌측 연구 참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에 관한 연구 I·II」 ※ 정부 연구용역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 급가구의 소비 효과」 ※ 노동경제논집 제44권제1 호 게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정부 연구용역
연구방법	이중차분 회귀분석 ※ 지원금 지급시기 카드 매출 변화를 분석하되, 확진자감소·거리두기완 화 등 교란요인은 지원 금 사용제한 업종 사례 와 대조하여 제거	설문조사	이중차분 회귀분석 ※ 지원금 지급시기 카드 매출 변화를 분석하되, 교란요인은 지원금 미수 령 가구 사례와 대조하 여 제거
주요결론	지원금의 26.2%~36.1%가 신용·체크카드소비 증가로 연결	지원금의 21.7%가 가계소비 증가로 연결	지원금의 19.2%~36.8%가 신용·체크카드소비 증가로 연결 ※ 1인가구: 36.8% 2인가구: 23.2% 3인가구: 20.3% 4인가구: 19.2%

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진행 중('25.11.20.~'26.4.25.)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I」, 2020.12., 이영욱,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2021.3., 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22.6. 등을 바탕으로 제작됨

참고2

기존 현금성 지원의 업종 · 가맹점 규모별 사용 현황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업종별 사용 현황(신용·체크카드 한정)]

긴급재난지원금 ('20년 5~8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1년 9~10월)		
업종	사용액	비중	업종	사용액	비중
마트/식료품	2조 5,143억원	26.3%	마트/식료품	2조 3,897억원	28.6%
대중음식점	2조 3,251억원	24.3%	음식점	1조 8,776억원	22.4%
병원/약국	1조 172억원	10.6%	병원/약국	7,560억원	9.0%
주유	5,788억원	6.1%	편의점	7,198억원	8.6%
의류/잡화	4,518억원	4.7%	주유	4,861억원	5.8%
기타	2조 6,719억원	28.0%	기타	2조 1,364억원	25.5%
합계	9조 5,591억원	100.0%	합계	8조 3,656억원	100.0%

※ 자료 : 행정안전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별 사용 현황(신용·체크카드 한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	사용액(억원)	비중(%)
대중음식점	36,419	40.3
마트/식료품	14,498	16.0
편의점	9,744	10.8
병원/약국	7,952	8.8
의류/잡화	3,294	3.6
학원	3,373	3.7
기타	15,181	16.8
계	90,461	100.0

※ 자료 : 행정안전부

[2020·2021년 재난지원금 가맹점 규모별 사용 현황(신용·체크카드 한정)]

가맹점 구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비중)	
	긴급재난지원금 (’20년 5~8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1년 9~10월)
계	9조 5,591억원(100.0%)	6조 8,761억원(100.0%)
영세 중소신용카드(연매출 30억 이하)	6조 725억원(63.5%)	5조 5,364억원(80.5%)
영세가맹점(3억 이하)	2조 3,787억원(24.9%)	2조 2,639억원(32.9%)
중소가맹점(3~30억)	3조 6,938억원(38.6%)	3조 2,725억원(47.6%)
대형신용카드가맹점(30억 초과)	3조 4,866억원(36.5%)	1조 3,397억원(19.5%)

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자료 미제출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3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당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처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처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면(面) 지역 하나로마트 일부
- 의무복무 군인이 나라사랑카드(KB, BC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사용지역 관계없이 PX 허용

□ 사용 제한 업종

연번	업종	브랜드
1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 기업형 슈퍼마켓 :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지에스 더 프레시, 김스클럽, 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 창고형 매장 :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2	백화점	▸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등
3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4	대형 외국계 매장	▸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5	프랜차이즈 직영점	▸ 스타벅스(직영 100%) 등 직영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
6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7	유흥업종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8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9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10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11	비소비성 지출	▸ 세금 : 국세, 지방세, 관세 ▸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액 등
12	면세점 업종	▸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화, 제주 등
13	보험업(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4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 및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전체 소요 예산 6.1조원 중 국비 비율이 약 78.6%(4.8조원)이며 지방비 비율이 약 21.4%(1.3조원)인데, 이는 국비 지원을 80%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70%의 지원을 적용³⁵⁾하였기 때문임.
- 그런데,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상하지 못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1.3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1.3조원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비부담액 총액 1.7조원의 76.4%로, 이는 최근 5개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비부담액과 비교하였을 때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지방비 부담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과중한 수준에 해당함.

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최근 5개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고보조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합계
2021년	1회	1,034,080	275,450	1,309,530
	2회	9,424,275	2,884,829	12,309,104
2022년	1회	334,404	334,404	668,808
	2회	2,547,248	1,415,278	3,962,526
2025년	1회	1,015,238	864,109	1,879,347
	2회	11,024,775	3,714,666	14,739,441
2026년	1회	5,490,578	1,712,228	7,202,806

주) 정부 제출안 기준이며, 2023년 및 2024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참조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증가하여 매칭 비율을 80%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남은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 다만, 최근 세수결손 이후 지방교부세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까지 지방교부세 감소 및 지방채무³⁶⁾의 증가로 관리채무비율이 상승하였다는 점, 2025년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 1조 7,000억원을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6)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액 기준 지방채무는 40조 7,38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1,736억원(56%)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40조 6,366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1,747억원(5.6%) 증가하였고 2023년도 결산액 기준 지방채 잔액은 38조 4,619억원으로 전년대비 2,974억원(0.8%) 증가하였음(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5.9., pp165-166).

[최근 5개년 지방교부세 규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 (A)	추경안 (B)	B-A	비율
보통교부세	655,171	666,466	598,439	604,018	616,984	662,373	45,389	7.4
특별교부세	20,263	20,612	17,875	16,464	19,081	20,484	1,403	7.4
부동산교부세	86,204	57,133	41,098	40,047	46,982	46,982	-	-
소방안전교부세	8,648	8,692	9,548	9,856	10,503	10,503	-	-
계	770,286	752,903	666,960	670,385	693,550	740,343	46,793	6.7

주) 2022~2024년은 결산 기준 / 2025~2026년은 예산 기준

※ 국회 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표성격
수지 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2.23	1.94	5.26	△1.27	△2.14	상향(↑)
	경상수지비율	75.02	69.95	64.62	73.12	75.81	하향(↓)
채무 관리	관리채무비율	6.28	7.06	6.93	7.08	7.36	하향(↓)
	관리채무상환비율	2.52	2.32	2.14	3.01	3.52	하향(↓)
	통합유동부채비율	26.27	24.05	22.23	22.60	24.72	하향(↓)

주 1) 2020~2022년은 결산 기준 / 2023~2024년은 예산 기준

2) 상향지표(↑)는 지표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 값이 낮을수록 양호

※ 행정안전부·지방세연구원, 「202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 2024.12., p28³⁷⁾

- 37) ①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에 활용됨.

$$\{(\text{세입}-\text{세출 및 순융자})/\text{세출 및 순융자}\} \times 100$$
으로 산출함.
- ② **경상수지비율**은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지의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자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구조 판단에 활용됨.
- ③ **관리채무비율**은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로 지방채무의 상대적 수준 측정에 활용됨.
- ④ **관리채무상환비율**은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 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채무 상황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 측정에 활용됨.
- 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통합부채 작성에 따른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충당정도 측정에 활용됨.

- 둘째, 일률적인 분담비율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소득계층 분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조율의 다층화 등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경제적 특성에 따라 재정력의 편차가 존재하는데, 2025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³⁸⁾와 재정자주도³⁹⁾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⁴⁰⁾⁴¹⁾.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인구수,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편차가 존재하고 소득계층 분포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⁴²⁾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자 수 등을 고려한 차등적 보조비율을 설계하여 지방재정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간 과도한 불비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행정안전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도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인데, 국고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설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역설적

(행정안전부·지방세연구원, 「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 2025.12., p286)

38)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39)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4.9., pp283-302

41)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제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당시에도 정부는 국고보조 80%(서울의 경우 70%), 지방비 20%의 매칭구조를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등은 재정력과 지방비 부담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40-42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252-253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p281-285).

이에, 정부는 최종 예산안에서 국고보조비율을 90%(서울의 경우 75%)로 인상하여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였음.

42)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표 참조

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한 국비-지방비 분담 문제는 과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유사한 현금 지원성 사업의 국회 심의 단계, 예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나,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종전 사업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차등적 매칭구조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예산 확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교한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지역별 재정력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관련 현황]

구분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주민등록인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비율		비율
서울	73.6	74.7	9,299	18.2	141.5	14.0	443.9	16.6
부산	42.7	55.5	3,241	6.3	75.6	7.5	243.1	9.1
대구	41.9	60.0	2,353	4.6	56.4	5.6	161.7	6.0
인천	49.2	60.3	3,052	6.0	66.4	6.6	184.2	6.9
광주	39.8	58.3	1,392	2.7	36.5	3.6	100.2	3.7
대전	41.1	59.8	1,440	2.8	31.6	3.1	80.7	3.0
울산	46.1	66.2	1,092	2.1	19.1	1.9	46.3	1.7
세종	54.3	62.3	392	0.8	4.1	0.4	9.4	0.4
경기	55.7	63.2	13,730	26.9	199.2	19.7	506.9	19.0
강원	25.7	70.6	1,508	3.0	36.1	3.6	89.1	3.3
충북	31.8	64.6	1,596	3.1	33.1	3.3	84.7	3.2
충남	32.2	63.7	2,136	4.2	40.0	4.0	97.9	3.7
전북	23.6	61.9	1,724	3.4	59.7	5.9	135.3	5.1
전남	23.7	64.8	1,779	3.5	53.6	5.3	110.8	4.1
경북	24.3	65.6	2,506	4.9	64.8	6.4	157.4	5.9
경남	34.3	65.8	3,207	6.3	76.1	7.5	184.3	6.9
제주	33.1	64.4	664	1.3	15.8	1.6	37.1	1.4
계	39.6	63.6	51,117		1,009.6		2,673	

주 1)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2025년 9월 기준이며,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1월 기준임

2)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024년 12월 기준이며, 타 보장제도 중복수급을 포함한 수치임

3) 기초생활수급자는 2024년 기준임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p59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인구→주민등록인구현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바. 유사한 논쟁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과거 유사 사례를 참고할 때 해당 사업의 연구용역 예산은 연구용역 시행기간이 불충분하여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다는 점, 2025년 소비쿠폰 사업의 성과분석 연구용역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됨에 따라 연내 연구용역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1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⁴³⁾.

[2025회계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	12,170,867	12,170,867	12,126,645	182	44,040
일반연구비(260-01)	-	200	200	-	182	18

※ 자료: 행정안전부

43)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2026년 4월 25일 완료된다는 설명임

-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시기, 사용기한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종전 사례를 참고할 때 예산안 확정부터 사용기간 종료까지 최대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내 연구용역 시행기간이 불충분하여 예산이 이월될 우려가 있음.

[과거 유사 사업의 집행기간]

구분		예산확정일 (A)	신청·지급 개시일 (B)	사용완료일 (C)	소요기간	
					B-A	C-B
긴급재난 지원금 (2020)		2020.04.30.	2020.05.11.	2020.08.31.	만 12일	만 112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		2021.07.24.	2021.09.06.	2021.12.31.	만 45일	만 11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1차	2025.07.04.	2025.07.21.	2025.11.30.	만 17일	만 131일
	2차		2025.09.22.		만 80일	만 69일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과거 현금 지원성 사업의 국회 심의 및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답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는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신규 사업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과거 세 차례 추진된 재난지원금 및 소비쿠폰 사업과 유사한 현금 지원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종전 유사 사업의 예산

심사 및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쟁점들이 동 사업의 심사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행정안전부가 그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과 환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성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시사함.

- 과거 재난지원금 및 소비쿠폰 사업 추진 당시 행정안전부는 매번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일반연구비(260-01목) 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연구용역은 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쳤을 뿐 예산 심의와 집행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지급 기준의 적정성, 지방재정 부담 등의 핵심 현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과거 유사 사업의 성과분석 현황]

구분	예산액	집행액	수행기관	연구결과	성과분석 내용
긴급재난 지원금 (2020)	150	147	한국개발연구원 (KDI)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긴급재난지원금 의 정책 효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	150	14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200	—	연구용역 진행 중		

※ 자료 : 행정안전부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이처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한 환류 없이 상태에서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마다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어 정책적 진전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어 심의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해당 예산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그간 유사 사업의 집행 실적,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비롯한 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과거 집행 사례를 참고하여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신규)(3131-306)

-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로 추진할 긴급성·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고용노동부의 기존 청년 일경험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기존 지원체계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측면은 없는지 검토하며, 동 사업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심의시 문제제기되었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없는지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가. 개 요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신규)’ 사업은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경험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사업으로 19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 본예산 (A)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	-	-	19,515	19,515	순증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	-	-	19,515	19,515	순증

※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과 고용인원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형태로 추진할 계획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 시범'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사업대상) 「청년기본법」 상 청년(10~34세)** 중 미취업자 2,500명

**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적용

- (사업기간) '26.5. ~ '26.12.

-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증액내역) 195억 5,100만원

구분	금액	산출 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9,365	- 인건비 : 2,500명×월 260.84만원*(1인당)×5개월×보조율 50% = 16,302.5백 * 월 234만원 기준, 4대 보험 포함 - 기타지원비 : 2,500명× 월 49만원**(1인당)×5개월×보조율 50% = 3,062.5백 ** 기업지원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교육·운영기관지원 월 14만원
일반수용비 (210-01)	70	- 전문가 참석·자문수당 등 : 5명×20회×0.2백 = 20백 - 홍보물 제작·배포 등 : 20회×2.5백 = 50백
일반용역비 (210-14)	50	- 컨설팅 및 성과평가 용역 50백×1식=50백
임차료 (210-07)	10	- 워크숍, 권역별 간담회, 전국 네트워크 회의 등 : 5회×2백 = 10백
국내여비 (220-01)	10	- 10명×10회×0.1백 = 10백
사업추진비 (240-01)	10	- 간담회, 현장점검, 관계관 회의 등 : 20회×0.5백 = 10백

※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는 2026년 2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우려 속에서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 행정안전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의 고용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지역 내 청년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긴급성·필요성, 고용노동부의 기존 청년 일경험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성·효과성, 세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2월 촉발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서, 법률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은 일견 충족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은 청년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인데, 해당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로 편성할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청년 일경험 사업의 신설 필요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청년 고용률 감소 및 실업률 증가는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아닌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인 추세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 최근 5개년 간 만 15세 ~ 34세 청년인구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2021년 실업률은 연간 6.3%였으나 2024년 4.6%까지 감소하였다가 2025년 4.9%로 다소 증가한 이후 2026년 2월에는 6.3%를 기록하

였음.

- 또한 청년인구의 고용률의 경우, 2021년 고용률은 연간 53%였으나 2024년 56.5%까지 상승하였다가 2025년 56.2%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6년 2월에는 55.1%까지 감소하였음.

[최근 5개년 청년인구 실업률 및 고용률]

연도	분기	실업률	고용률
2021	1분기	7.9	51.2
	2분기	7.4	53.0
	3분기	5.1	53.8
	4분기	4.7	54.0
	연간	6.3	53.0
2022	1분기	5.3	54.8
	2분기	5.8	55.9
	3분기	4.9	56.1
	4분기	4.5	55.5
	연간	5.1	55.6
2023	1분기	5.3	55.3
	2분기	5.0	56.3
	3분기	4.1	56.7
	4분기	4.3	56.3
	연간	4.7	56.2
2024	1분기	5.2	56.2
	2분기	5.3	56.9
	3분기	4.1	56.7
	4분기	4.3	56.1
	연간	4.7	56.5
2025	1분기	5.4	55.5
	2분기	5.1	56.7
	3분기	4.2	56.6
	4분기	4.7	55.9
	연간	4.9	56.2
2026	1월	5.3	55.2
	2월	6.3	55.1

※ 자료 : 국가데이터치 -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그런데 미국-이란 전쟁이 2026년 2월 28일에 발발되었음을 고려할 때, 올해 2개월 간 청년 고용상황 악화는 전쟁의 여파가 아니라 2025년부터 지속된 경제침체의 영향으로서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미 검토되었어야 했다고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바 없고 오히려 2018년부터 지속해온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종료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예산 당국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긴급성·필요성이 크다고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특히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측면에서 청년인구 고용 문제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 가능한 부분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대함을 고려할 때 향후에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할 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때,
- 동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목적정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 한편, 이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일자리지원(3100)’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인 ‘지역일자리창출(3131)’의 세부사업으로 분류되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왔음.

□ 이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조정·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⁴⁾

4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 동 사업의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청년의 일경험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각종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취지임을 고려
할 때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정책과정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
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정책과정**이 보다 적절
한 측면이 있겠음.

□ 반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시대위원
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별도의 절차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적
인 판단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므로 예산편
성 과정에서의 민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예산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
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
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
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한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
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 고용노동부는 일경험이 부족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고용창출(1000)’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인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1051)’ 사업의 일환으로 본예산 2,076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해당 사업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서, 참여기간과 사업 수행방식에 따라 인턴형(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2026년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주요사업]

구분	인턴형(국내)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간	1~5개월 내외	2개월 내외	6개월 이내	
대상	23,000명	10,000명	9,500명	
'26년 예산 (백만원)	131,100	27,000	35,000	
수행 방식	-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프로그램 운영	-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 - 기업 또는 운영기관 지정 전문가가 과정 코칭 -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을 심사하여 피드백	- 기업이 편성한 일 경험, 직무훈련,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 수행	
	사전 교육 직업기초능력+직무교육	직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지 원 내 용	청년	참여수당 등	프로젝트 수행비	프로그램 안내
	기업	멘토수당 등 운영·관리비	프로젝트 기획·코칭·심사 등 운영·관리비	운영비 지원 (대기업 50% 매칭)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운영기관) 직무교육운영비(교육기관)		

□ 그런데 이 중 인턴형(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에게 1~5개월 내의 단기간 동안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턴’ 경험을 제공하여 실전 직무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두 사업은 청년들이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중복됨.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을 통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간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경험을 제공해주고자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인턴형)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에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인턴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운영기관과 약정을 체결된 기업으로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외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의 기업⁴⁵⁾과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사회적기업이나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참여기업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사실상 청년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에서도 일경험을

45) 이 때 기업의 범위에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포함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한적** 효과가 있을 뿐임.

['청년 일경험(인턴형)' 사업과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비교]

구분		청년 일경험(인턴형) 지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형태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기간		4~20주 내외 (분야별 사전직무교육 별도)	5개월 (분야별 사전직무교육 계획중)
지원 금액	청년	주 35만원 교육참여수당 일 1만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체류지원비 월 20만원	월 260.84만원 *4대보험 포함
	기업	주 5만원	월 20만원
	멘토	주 3.75만원	월 15만원
	운영 교육 기관	(운영기관) 1인 60만원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 (20시간 이상 실시)	1인 월 14만원 (총 70만원)
청년 지위		수련생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참여자, 4대보험 미적용 및 재해보험 일괄가입)	근로자 (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4대보험 적용)

※ 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 둘째, 청년에 일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의 자격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기업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의 취지가 기존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에서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할 때,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과 별도로 운영기관이나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가 관련 홍보·점검·평가 등을 진행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에서 참여 대상 기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부가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사회적가치형**’ 유형을 신설하여 사회적기업 등에서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인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모두 사회연대경제조직의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사회적기업 이면서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인 경우가 존재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유형 간에도 중복이 있음을 고려할 때,⁴⁶⁾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유형에 따라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통합지원센터와 모니터링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통합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청년 일경험 포털’⁴⁷⁾을 운영하는 등 관련 지원체계를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해당 기관들은 수년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46)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조직 중 단일유형은 89.6%이고 복수유형은 10.4%이며, 경기도 사회적기업 1,029개소 중 218개소는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남.

47) yw.work24.go.kr

□ 반면, 행정안전부는 현재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사회연대경제국이 신설되고 관련 업무가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되는 등 조직 신설의 초기단계에 있고,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교육기관 선정, 관련 정책 홍보 방안, 시행지침 등 정책 집행의 추진체계와 과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입장으로,

각종 고용 촉진 정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와 달리 청년 일경험을 지원하는 데 있어 업무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직무교육의 관점에서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출석률에 따라 교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주 단위’로 수당을 제공하는 등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일자리 제공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5개월 간 단기근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직무교육은 현재 계획중에 있음.

□ 이때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청년들이 실제 구직시장에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청년 일경험 사업은 ‘근로’와 ‘교육’의 균형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과 같이 ‘근로를 통한 교육’이라는 ‘일경험 지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셋째,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에서 기업의 자격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는데 효과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인턴형) 지원’ 사업에서 기업 요건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을 제외하는 것은 청년들이 열악한 기업 환경에서 인턴 근무를 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청년을 보호하고,

기업이 청년들에게 단순 업무 처리를 지시하기보다는 양질의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일경험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

□ 반면,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서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근무하며 사회적 가치를 체감하는 등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일경험이라는 직무훈련을 통해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정규 노동시장 진입시 일경험 있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정책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세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형태로 청년 1인당 월 약 2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실제 정책의 전달 체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실태 및 정책 도입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동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형태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정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 보임.
- 앞서 논의한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고용노동부는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기관이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참여 기업·청년을 모집하도록 함.
- 반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형태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은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2025년 종료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계획·설계하도록 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사업의 유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기업부담분이 함께 투입되는 구조로 진행되었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 편성]

구분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착지원형
사업대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거주 원칙			
취창업 분야		지역경제구조 변화 대응, 미래 신산업·지역뉴딜 지역특화·혁신 연계 직무 분야 일자리	창업 청년 지원	사회적경제 연계 청년혁신활동가 육성 + 지역사회 안전망 기여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1년 이내	최대 3년
지원내용		취업 지원(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등) 정착 시 인센티브	신규창업 및 창업청년 성장 지원	취업 지원(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지원(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등) 정착 시 인센티브
지원 금액		인건비 2,400만원 기타지원비 300만원	창업지원비 1,500만원 기타지원비 150만원	인건비(풀) 2,250만원 인건비(파트) 1,125만원 기타지원비 200만원	인건비 2,400만원 기타지원비 300만원
국비 보조율		전국 50% 서울 40% ※ 기업부담분 20%	전국 50%	전국 40% ※ 기업부담분 10%	전국 50% 서울 30% ※ 기업부담분 20%
경감 범위	임금	기업부담분 중 10%까지 지방비 부담 조정 可	-	기업부담분 전액 지방비 부담 可	기업부담분 전액을 지방비 부담 조정 可
	4대 보험	임금 부담 비율 외 별도 부담 필수		임금 부담 비율 외 별도 부담 필수	지방비 부담으로 기업에 추가 지원 가능

※ 자료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제작성

☐ 둘째, 동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실태 및 수요와 청년의 인턴 희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참여인원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동 사업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10인 미만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회연대경제조

직 실태조사 결과 전국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은 약 34,000개⁴⁸⁾로 계속 운영률⁴⁹⁾을 고려할 때 약 30,000개 정도의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1개 기업에 1명의 청년이 근무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전체 대상 기업의 약 8%가 참여해야 하는 수준으로,

전국 635만개 사업체 중 2025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인턴형)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약 4,000개 임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의 대상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일경험 참여 청년·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수준과 근로시간, 기업의 부담, 사업 참여 대상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21년 기준 협동조합 취업자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3시간으로 실질 임금은 147만원(취업자) ~ 170만원(신규취업자)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음.⁵⁰⁾

□ 반면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매월 청년 1인당 약 260만원(4대 보험 포함)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8%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이러한 사업 계획 하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기존 근로자와

48) coop 협동조합의 「설립현황」에 따르면 전국 협동조합은 32,121개(일반협동조합 24,962개 및 사회적협동조합 7,005개 등)이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마을기업은 1,726개(2024년 말 기준)로 파악됨.

49)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계속 운영률은 93.7%이며, 조직 유형별로는 일반협동조합 86.6%, 사회적협동조합 94.5%, 마을기업 95.2%로 나타남.

50) 한국노동연구원,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고용효과」, 2021.12.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청년 사이에 임금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연대경제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하락시키고 실직 후 청년 인턴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입장에서는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청년들이 기존 근로자보다 오히려 장시간 근무할 수 있고,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청년 고용에 따라 4대 보험이나 인건비 일부 등을 자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근로자를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청년으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이외에도 동 사업은 사업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면서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⁵¹⁾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연령이 최대 49세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인구의 지방유입을 통해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보임.

□ 특히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평균 고용인원⁵²⁾이 약 12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 사실상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을

51)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청년 연령의 하한이나 상한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포천시, 충남 홍성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경남 고성군·산청군·창녕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경북 봉화군·예천군·울릉군·울진군·청도군·청송군, 전남 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의령군·장성군·장수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 전북 무주군·순창군, 강원 삼척시·양구군·인제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화천군 등에서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49세까지로 확대하고 있음.

52)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평균 고용인원은 12.1명으로, 1명~5명 미만 고용 인원이 전체의 42.6%를 차지함.

설계할 필요가 있겠음.⁵³⁾

53) 특히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심사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운영비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도입되지 않고 자금의 회수를 전제로 하는 ‘사회연대경제금융’ 관련 정책이 도입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3. 보통교부세(1631-300)

-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증액되는 보통교부세의 일부를 최근 증가된 지방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로써⁵⁴⁾,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구성됨.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재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것이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군·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는 것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시설의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의 재원으로 교부하는 것임.

이 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내국세 추계액이 24.2조원 증가(343.9조→368.1조)함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에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임.

54)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자원 배분 기준]

구 분		자원 배분 기준
보통교부세		◦내국세 * 19.24% * 97%
특별교부세		◦내국세 * 19.24% * 3%
	지역현안	- 특별교부세액의 40%
	국가지방협력	- 특별교부세액의 10%
	재난안전	- 특별교부세액의 50%

□ 지방교부세 관련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역을 각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는 2026년 본예산 대비 4조 5,389억 6,900만원 증가한 66조 2,343억 2,100만원, 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561억 4,200만원 증가한 8,193억 9,900만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40억 3,800만원 증가한 2,048억 4,900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701억 9,000만원이 증가한 1조 242억 4,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 본예산	2026년 제1회 추경안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보통교부세		60,401,769	60,401,769	61,698,352	66,237,321	66,237,321	4,538,969	7.4
특별 교부세	지역현안	658,551	658,551	763,247	819,399	819,399	56,152	7.4
	국가지방협력	164,638	164,638	190,811	204,849	204,849	14,038	7.4
	재난안전	823,189	823,189	954,058	1,024,248	1,024,248	70,190	7.4

나. 보통교부세 추경증액분의 일부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증액되는 보통교부세의 일부를 최근 증가된 지방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6.4조원, 30.8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세입경정 없이 자치단체에 미교부 또는 불용하는 방식으로 축소하였음.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지방교부세 예산(75.3조원)중 8.2조원(보통교부세 7.2조원 및 부동산교부세 1.0조원)을 미교부(불용)하였고, 2024년에는 지방교부세 예산(66.8조원)중 2.2조원을 미교부(불용)하였음.

[2023년, 2024년 세수결손 및 지방교부세 미교부(불용)현황]

(단위: 조원)

구 분	세수결손액	지방교부세 미교부(불용)액	미교부 내역
2023	56.4	8.2	보통교부세:7.2 부동산교부세:1.0
2024	30.8	2.2	보통교부세:2.05 특별교부세:0.06 소방안전교부세:0.1

자료: 행정안전부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결산사업설명자료(Ⅱ-1)

□ 이러한 지방교부세 미교부(불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각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의 활용, 지출

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하였음.⁵⁵⁾

□ 한편, 2025년도에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각 추가경정예산에 대응 지방비가 요구되는 지방보조사업들이 편성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추가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된 「지자체 보조사업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461억원의 대응 지방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조 7,147억원의 대응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음⁵⁶⁾. 그러나,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지 않았으므로, 각 자치단체들은 해당 대응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충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됨⁵⁷⁾.

55) 기획재정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2023. 9. 18.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세계잉여금(7조원) 등 약 41조원 수준

56) 언급된 대응 지방비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회 심의 후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대응 지방비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대응 지방비 3.7조원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의 대응 지방비가 국회 심의 후 1.1조원 가량 축소(2.85조원→1.75조원)되었음.

57) 연합뉴스, “[전국레이더] 2차 소비쿠폰 예산 비상…허리띠 졸라매고 지방채 발행”, 2025.8.24.

-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873억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제출하였음

[2025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 대응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자체 보조금 추경예산안	대응 지방비 추계 ¹⁾
2025년 제1회 추경안	1,015,238	864,109
2025년 제2회 추경안	11,024,775	3,714,666 ²⁾

자료: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지자체 보조사업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주:1) 대응 지방비 추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국회심의 후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의 대응 지방비 추계 규모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2) 2025년 제2회 추경안에서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당초 대응 지방비는 2조 8,565억원 규모였으나, 확정예산 기준으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 7,535억원으로 규모가 축소(△1조 1,115억원)되었음.

-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채무액 규모는 연도말 기준 2021년 36조 605억원에서 2024년 40조 7,38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총채무액 현황]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채무액	360,605	382,746	385,644	407,380	결산중
지방채	359,481	381,672	384,619	406,366	결산중
채무부담행위	39	19	0	20	결산중
보증채무이행책임액	1,085	1,055	1,024	994	결산중

주) 각 연도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한편, 지방채 발행액 규모는 인천, 경기, 강원, 전북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2025년 계획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치(결산액)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액 규모는 2025년 계획액이 9조 1,825억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치(결산

액) 6조 8,919억원에서 33%가량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 양호하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보임.

[지방채 발행 현황 및 계획]

(단위: 억 원)

지자체명 (기초자치단체포함)	2022년 발행액	2023년 발행액	2024년 발행액	2022~2024년 평균 발행액	2025년 발행액(계획액)
서울	24,816	16,816	16,226	19,286	19,338
부산	4,073	4,081	7,555	5,236	7,229
대구	4,524	2,841	2,571	3,312	3,014
인천	2,475	1,553	3,463	2,497	6,027
광주	3,170	3,348	7,027	4,515	5,143
대전	2,660	3,252	3,740	3,217	2,400
울산	1,241	1,213	1,064	1,173	1,250
세종	596	382	1,072	683	1,079
경기	12,634	10,347	8,302	10,428	17,131
강원	1,968	1,704	1,804	1,825	3,729
충북	1,974	1,899	3,287	2,387	2,816
충남	2,353	2,888	4,928	3,390	6,691
전북	1,620	1,257	2,202	1,693	5,160
전남	2,563	2,162	3,454	2,726	3,842
경북	2,806	2,129	3,127	2,687	3,200
경남	2,989	781	897	1,556	1,176
제주	3,347	1,500	2,078	2,308	2,600
합 계	75,809	58,153	72,797	68,919	91,825

주)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결산기준, 2025년도는 결산 미완료로 발행계획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약 5.5조원 규모의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 관련된 대응 지방비는 1.7조원 규모로 추계되고 있음⁵⁸⁾. 따라서, 보통교부세 증액분 4.5조 원⁵⁹⁾ 중 1.7조원 규모는 대응 지방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나

58)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지자체 보조사업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59)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비교적 용도가 자유로운 보통교부세에 한정해서 논의함.

머지 2.8조원 가량은 각 자치단체가 정책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추경예산의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에너지위기 및 고물가·고환율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한편, 일부는 다소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앙정부 역시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초과세수 25.2조원 중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증액분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지방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방안⁶⁰⁾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0)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4.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의 최근 5년 간의 월별 교부액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교부가 연말(12월)에 집중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특별교부세 재원을 고려한다면 연말 교부 집중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대응 수요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별교부세의 적시 교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기간 확보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운용 방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은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 예기치 못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특별 재정수요에 교부하는 내용으로⁶¹⁾, 2026년도 본예산에는 9,54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701억 9,000만원을증액하여 1조 242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 본예산(A)	2026년 추경(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23,189	823,189	954,058	1,024,248	70,190	7.4

61)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운용방안 개선 노력 필요

- 내국세 추정액이 약 24조원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은 2026년 본예산 대비 70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⁶²⁾.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2026년 추가경정예산 추계 내역⁶³⁾]

구 분	산출 내역
2025년 본예산	823,189백만원['25년 내국세추정액 338,129,200백-담배분개소세 45%(924,435백)} × 19.24% × 3% × 50% + '23년 정산분(△149,984백)
2026년 본예산	954,058백만원['26년 내국세추정액 343,889,346백-담배분개소세 45%(940,338백)} × 19.24% × 3% × 50% + '24년 정산분(△35,693백)
2026년 추경예산	1,024,248백만원['26년 내국세추정액 368,113,310백-담배분개소세 45%(843,359백)} × 19.24% × 3% × 50% + '24년 정산분(△35,693백)

(자료 : 행정안전부)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의 산정항목은 ①응급복구 사업, ②항구복구 사업, ③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④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안전부는 응급복구 사업과 항구복구 사업의 경우 재난 발생 등 계기 수시 교부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및 그 밖의 사업(이하 “재난안전 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정기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⁶⁴⁾.

62)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63)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3. (생 략)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6. (생 략)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64)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산정항목	교부기준
응급복구 사업	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확정된 금액.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항구복구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가 확정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금액
그 밖에 재난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에 재난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의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 따르면, 재난안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재난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재난예방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통해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교부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 사업의 효율성 및 국민안전체감도,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안전문화 확산, 재난관리기금 운용, 재난관리평가결과 및 재난안전관리 유인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재난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재난예방효과가 높은 사업위주로 지원
교부 신청 제외 대상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종 지원 관련 사업(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 · 국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 · 타당성·효율성 문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 ·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 사업이나 단순 행사성 사업 · 부지매입비, 보상비 등 본 사업 착공 이전에 필요한 비용
집행 관리	· 교부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 · 교부조건 또는 용도제한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해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 ·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가능
반환· 감액	· 교부세 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세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경우 ·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금액 결정

(자료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 2025년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교부된 액수는 약 8,232억원이고, 산정항목별로 살펴보면 응급복구 사업에 약 2,043억원, 항구복구 사업에 약 3,334억원, 재난안전 사업에 약 2,855억원이 교부되었으며, 2026년의 경우에는 3월까지 응급복구 사업에 약 1,143억원이 교부된 것으로 파악됨.

[2025년 시·도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응급복구 사업	항구복구 사업	재난안전 사업
계	823,189	204,259	333,399	285,531
서울	25,842	4,868	-	20,974
부산	12,257	3,427	-	8,830
대구	11,222	4,144	-	7,078
인천	13,923	5,686	-	8,237
광주	20,229	6,309	5,680	8,240
대전	6,538	2,125	-	4,413
울산	12,368	3,292	150	8,926
세종	5,705	1,635	1,480	2,590
경기	63,278	20,817	18,320	24,141
강원	39,002	14,625	-	24,377
충북	33,077	12,593	1,560	18,924
충남	121,316	20,507	71,050	29,759
전북	36,245	13,833	360	22,052
전남	82,544	17,825	32,370	32,349
경북	199,466	49,423	120,477	29,566
경남	133,242	20,571	81,952	30,719
제주	6,935	2,579	-	4,356

(자료 : 행정안전부)

[2025년 및 2026년 산정항목별 교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산액	교부집행액	응급복구 사업	항구복구 사업	재난안전 사업
2025년	8,232	8,232	2,043	3,334	2,855
2026년 (~3월)	9,541	1,143	1,143	-	-

(자료 : 행정안전부)

□ 그런데, 최근 5년의 전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월별로 살펴보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3월)과 집중호우(7~9월)가 발생했던 2025년을 제외하고, 연말(12월)에 교부가 이루어진 금액의 비중이 각 연도별로 최소 35%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

□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사업에 한정하여 2021-2025년 12월 교부액을 살펴보면, 전체 교부액 대비 재난안전 사업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

중은 약 95%로, 연말 교부액의 대부분이 재난안전 사업 목적으로 교부되었음.

[2021-2025년 12월 교부액 중 재난안전사업 교부액 및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교부액(A)	재난안전 사업 교부액(B)	비중(B/A)
계	1,728,205	1,642,504	95.0%
2021년 12월	463,546	452,245	97.6%
2022년 12월	399,287	377,187	94.5%
2023년 12월	370,341	357,141	96.4%
2024년 12월	425,500	401,400	94.3%
2025년 12월	69,531	54,531	78.4%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 재작성)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사업에 대하여 재난 발생 시 우선 수시 교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발생 재난의 규모가 크지 않아 위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경우 상대적으로 잔여분이 늘어나게 되고, 일반적인 보조금과 같이 월별 균등 교부가 사실상 어려우며 하반기 혹은 연도 말 재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형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재난대책비나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⁶⁵⁾, 적어도 재난안전 사업 목적의 교부는 개별 사업 내용

65)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3월)과 집중호우(7~9월)로 인해 연말(12월) 교부 비중이 적었던 2025년의 경우에도 위 두 재난의 복구 등과 관련하여 재난대책비 8,248억 4,600만원과 예비비 393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 초대형산불 및 집중호우 관련 재난대책비 및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재난명(발생월)	재난대책비	예비비	합계
초대형산불(3월)	453,523	-	453,523
집중호우(7월)	362,613	-	362,613
집중호우(8월)	-	31,006	31,006
집중호우(9월)	8,710	8,300	17,010
합 계	824,846	39,306	864,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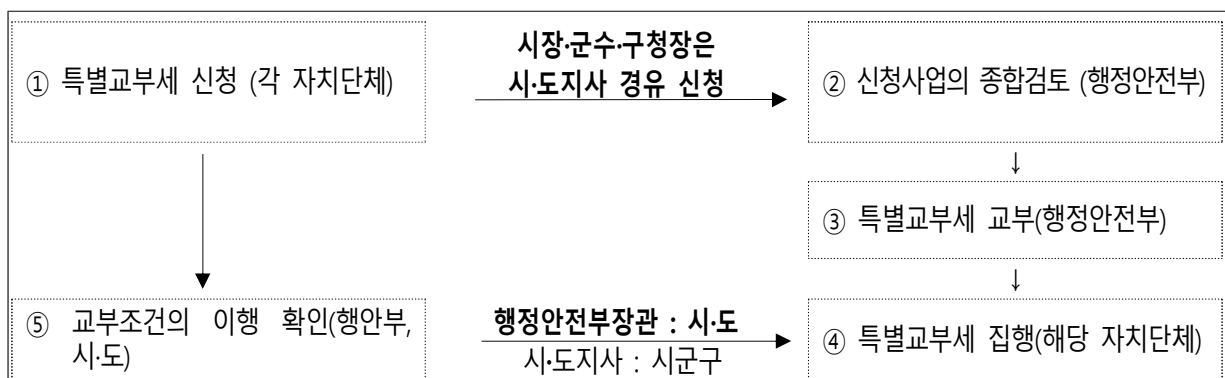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별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26년 교부액이 1,143억원(사업 634건)이라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재원을 고려하면
2026년에도 연말(12월)에 재난안전 사업 목적의 교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교부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교부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
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검토를 거쳐 교
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각 지역별·연도별 재난안전 대응 관련 각 지방자치
단체의 수요에 대한 누적적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절차]



(자료 :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대응 수요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교부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교부세의 적시 교부를 통한 사업 기간 확보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대체토론의 요지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상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이 컨트롤타워로 명시되어 있으나 김대기 비서실장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도 다르게 답변하였다는 지적
-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을 지방정부와 매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산불피해 지원 접수와 관련해 읍·면·동에 한시적인 행정 지원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반영 검토 필요
-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 예산 반영 필요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한시적인 고용에 불과하다는 지적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 여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지적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대상 요건인 청년 연령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일자리 창출에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적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고유가로 인한 정확한 피해 진단 없이 기준을 소득, 지역으로 획일화하고 있고, 고유가로 인한 피해가 직격되는 계층(화물, 택시 운전자 등)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
-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
-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부대비용 52억을 편성하였는데, 당시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다시 시스템 구축 비용을 편성한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역별로 차등지원할 경우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비 비중을 상향할 필요
- 고유가 대응방안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책 고려할 필요
-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차량 5부제 수준 이상의 대응이 필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자치단체 분담 비율을 차등화 할 필요
- 그 동안 지원금 지급 시 지급 기준이 가구·개인으로 계속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초과세수로 인한 재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쟁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동참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에 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중동 전쟁을 원인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적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사업과 사업 대상이 달라 중복되지 않는다는 지적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맞춤형으로 적시에 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추진할 필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 소득 수준별 지역별 차등 지급액 산출 근거 파악 필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비용은 과거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절감이 가능한 항목으로 보인다는 지적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양부남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1억 300만원(196억 1,800만원)을 감액하고, 총 8,049억 800만원(534억 8,900만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8,048억 500만원(338억 7,1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⁶⁶⁾.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서 195억 1,500만원 감액의견과 116억 1,900만원 증액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1억 300만원
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원안유지 의견과 7,398억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서 116억 1,900만원 증액의견과 195억 1,500만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지원에 261억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에 177억 3,800만원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산지원에 81억 8,000만원

☐ 산불피해 추가지원 전담인력 지원에 11억 4,000만원

66) 괄호 안의 수치는 최대 감액의견을 기준으로 한 것임

□ 햇빛 소득마을 확산에

3억 3,100만원

을 각각 증액하여 7개 세부사업에서 총 8,049억 800만원을 증액·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
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즉시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7. 심사결과

가.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 수정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부대의견

가. 행정안전부 소관

-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관련 타 부처가 수행 중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청년들이 5개월 단기근무 이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속성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고 만 39세 이하 청년인구의 지방유입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즉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과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다.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사용처를 설정한다.

※ 첨부 :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 첨부 】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6. 4.

I.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정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행정안전 위원회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804,908 (53,489)	△103 (△19,618)	804,805 (33,871)
	합 계		804,908 (53,489)	△103 (△19,618)	804,805 (33,871)

3.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조정 없음

II.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가. 행정안전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증감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지자체조직및인 사관리효율화 (1131-304)	927	-	927	18,665	17,738	○ 202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정보시스템 데이 터 통합, 통합 초기 필수지원 비용, 행정통합지원 운영비 등 177억 3,800만원 증액	
2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지원 (신규)	-	-	-	26,100	26,100	○ 2026.7. 인천광역시의 개편 자치구(제물포구·영종구·검단 구·서구)의 성공적인 출범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개 편전환 지원 비용 261억원 증액	
3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3131-306)	-	19,515	19,515	(1안) - (2안) 31,134	(1안) △19,515 (전액감액) (2안) (2안)	○ 동 사업은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1안) 동 사업은 추경안 편성의 목적·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5개월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연대경 제기본법」 제정 전으로 근거 법률이 부재하고, 조례로 청년 연령을 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개의 안을 병기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증감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1,619	정하는 경우 청년 정책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전액 감액 (2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 보조율을 80%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116억 1,900만원 증액	
4	햇빛 소득마을 확산 (신규)	-	-	-	331	331	○ 동 사업은 햇빛소득마을을 공모하려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 대상 선정 등에 필요한 평가용역비를 위한 3억 3,100만원 신규 반영	
5	지방세입 채납관리단 확산지원 (신규)	-	-	-	8,180	8,180	○ 동 사업은 지방정부의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지방세입 채납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81억 8,000만원(국비 보조사업비 및 직접사업비) 신규 반영 - 총사업비 201억 8,000만원(국비 보조사업비:80억원, 직접사업비:1.8억원, 지방 매칭비: 120억원)	
6	고유가 피해지원금 (1350-302)	-	4,825,185	4,825,185	(1안) 4,825,082	(1안) 원안유지	○ 동 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받는 자들에게 지역·소득별로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1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개의 안을 병기
					(2안) 739,800	(2안) 원안유지	(2안) 지역·소득기준 외에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예산 7,398억원 증액	
					(2안) 5,564,882	(2안) 원안유지	○ 동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인건비 항목은 해당 인원이 동 사업을 위해 별도로 채용된 인원이 아니고 해당 업무 외의 기존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증감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1억 352만 1,000원 감액	
7	산불피해 추가지원 전담인력 지원 (신규)	-	-	-	1,140	1,140	○ 세부사업 ‘산불피해 추가지원 전담인력 지원’ 을 신설하여 산불피해 추가 지원 신청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에 필요한 11억 4,000만원 증액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해당 없음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 없음

Ⅲ. 부대의견

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관련 타 부처가 수행 중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청년들이 5개월 단기근무 이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속성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고 만 39세 이하 청년인구의 지방유입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즉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과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다.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사용처를 설정한다.